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 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999. 5. 17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9년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4월 29일
- 다. 상정일자 : 1999년 5월 17일 (제160회임시회 제3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도교육청 교육국장 최성태)

가. 제안이유

-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99공립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시험에 선발된 자의 교과전담교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를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수교육대상자 수강료 (안 제2조)
80명미만 1,071,000원, 120명미만 954,000원, 160명미만 887,000원
200명미만 854,000원, 240명미만 826,000원, 280명미만 811,000원
320명미만 796,000원, 320명이상 787,000원
-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5일전까지 납부 (안 제3조)
- 과오납 및 개강하기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료 미반환 (안 제4조 제1호 및 제2호)
-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강허가 취소 (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김문기)

- 「교원자격의 취득을위한 보수교육에관한규칙」(교육부령) 제8조 제2항에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의 수강료는 초등교사신규 임용공동관리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산출한 표준연수경비 자료를 적용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